

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24-9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년 1월

제 출 자: 강 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- 신규로 건립한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양질의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,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일반 현황

- 위탁시설 현황

시설명	소재지	시설 규모		개관 예정월
		연면적	주차 대수	
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	가로공원로80길55 (화곡동 366-59)	233.1㎡ (70.6평)	8면	'24년 2월

- 위탁운영체 현황

대상기관명(대표자)	화곡중앙시장상인회(손구천)
설립일자 및 연혁	2005. 5. 10. 상인회 등록
주요사업	화곡중앙시장 활성화
인력현황	사무장 1명
재정부담능력	'23년 수입 41,630천원(조합원 월 회비 상점당 35,000원 등)
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등	2021년도 강서구청 지방보조금사업 완료(시설현대화,경영현대화) 2022년도 강서구청 지방보조금사업 완료(시설현대화,경영현대화) 2023년 강서구청 지방보조금사업 완료(시설현대화,경영현대화)

나. 필요성

- 전통시장 고객주차장은 시장 방문고객의 서비스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고 책임경영과 안전사고 예방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상인조직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
-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은 방문 고객의 서비스 요구에 신속하게 응대하고 책임경영과 시설물 안전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화곡중앙시장 상인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음

다. 주요 위탁내용

- 추진근거 : [붙임 1 참조]
- 위탁기간 : 5년
- 소요예산 : 해당사항 없음
- 위탁사무 내용 :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및 관리 전반 등
- 수탁자 선정 : ‘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위원회’ 심의 의결 (2024. 1. 12.) [붙임 2 참조]

라. 추진일정

- 2024. 1월 :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위원회 개최 및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
- 2024. 2월 : 민간위탁 계약 체결 및 주차장 운영 개시

3. 참고자료

가. 추진근거 관계법령(붙임 1)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의2 및 제19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및 제9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4조 및 제13조
- 「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」 제24조[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-48호]

나.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(붙임 2)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 3)

1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의 2**제17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**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·수익허가 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9조(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)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「주차장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,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2.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및 제9조**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**

-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9조(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)

-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(이하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3.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4조

제4조(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)

②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상인조직등”이라 한다)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상인조직

제13조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)

-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회수는 한 차례에 한하며,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.
-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.

4. 「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」 제24조(주차장 시설 위탁운영)

제24조(주차장 시설 위탁운영)
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「주차장법」에 따라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, 「전통시장법」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, 시장관리자 등에 위탁할 수 있고,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장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.

심 의 의 결 서

안 건

○ '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관리' 신규 민간위탁 적정성 및 수의계약 적정성 심의

일 시: 2024. 1. 12.(금) 10:00

심의결과: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.

연번	위탁사무명	민간위탁 적정성	수의계약 적정성
1	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관리	적정	적정

2024. 1. 12.

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

위원장	오	수	홍	(서명)
위원	황	수	정	(서명)
위원	김	종	환	(서명)
위원	은	선	경	(서명)
위원	이	충	현	(서명)
위원	박	상	일	(서명)
위원	김	옥	단	(서명)

강서구청장 귀하

**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
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**비용발생 요인** :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민간 위탁

2. **미첨부 근거 규정** :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
제9조제4항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)

3. **미첨부 사유** :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상인
조직에서 부담하여 별도의 지원 예산이 없음

4. **작성자** : 미래경제국 지역경제과 (담당: 행정7급 이소현 / 2600-6277)